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64호로 2023년 5월 2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2조)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5. 31.~ 6. 6.):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종류를 특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 안 별표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법령 중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그밖에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일부 정비한 것으로 입법의 명확성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⑦ (생략)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신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 6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⑤ (생략)